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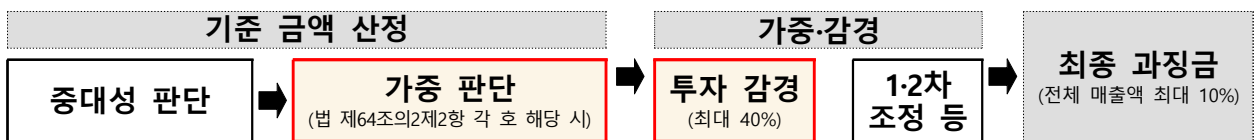
#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 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6.3.10. 공포, 9.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 < 과징금 산정 흐름도 >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및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및 피해 규모(1천만 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가중·감경 등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 ① 고의·중과실+반복 ② 고의·중과실+1천만 명↑ 피해 ③ 시정명령 불이행+유출

\*\* ▲ 위반행위(고의·중과실, 반복,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및 정도 ▲ 위반 경위 ▲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1천만↑)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감경의 상한(40%) 및 법률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감경 제외

이와 함께,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26. 9. 11.)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조사조정국	책임자	과 장	강대현 (02-2100-3101)
	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전창민 (02-2100-3161)

